



# 일본의 해양환경보호와 遠洋漁業

河合 弘 / 日本 外務省 漁業局

## 1. 200해리 체제확립에 의한 영향

'82년에 채택된 UN海洋法條約은 포괄적인 새로운 해양법 질서를 형성하는 일환으로서 200해리 체제를 규정한 배타적인 경제수역제도 외에도 公海, 해양환경 보호 및 보전, 해양의 과학적 조사등 원양어업에 대한 중요하고도 광범위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同條約은 60개국의 비준을 받아 발효된 것으로 '87년 1월 현재 32개국이 아직 비준을 발효하지 않고 있지만, 200해리 경제수역 또는 200해리 어업보존 수역을 설정하고 있는 나라는 도합 82개국에 달하여 어업에 관한 제한, 연안국이 200해리까지 관할권을 미치는 것은 국제적으로 거의 정착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200해리 체제」의 확립이 일본의 원양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근년 연안국의 자국어업자원에 대한 권리주장이 매년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수역에서의 일본의 전통적 원양어업의 우위확보가 번번히 곤란하게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 및 소련과의 관계에서 현저히 나타나고 있다. 다시말해 미국 및 소련은 자국자원의 보존과 자국 수산업의 진흥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미국수역 및 소련수역에서의 對日 어업할당을 매년 감소시키고 있다.

이러한 200해리 체제의 확립과 그에 따른 연안국의 자국자원에 대한 권리주장 강화는 일본 원양어업에는 심한 시련이 되고 있다. 더불어 근년에 들어서는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과 해양생물의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어업활동에 대한 제고를 꾀하여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보호 운동은 일본의 원양어업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제공한 것으로 금후의 동정에 대해 주목된다.

## 2. 해양환경 보호 및 보전에 따른 국제적 동향

### (1) UN인간환경회의

주지된 바와 같이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걸쳐 일본에서는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공해와 자연파괴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되었으며, 선진국에서도 이미 같은 상태의 공해를 겪었으



며, 또한 開途國에서도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산림, 동식물, 토양 등 환경의 악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두드러진 환경 파괴로 72년 6월 스톡홀름에서 UN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되게 되었다. 이 회의는 환경문제를 인류공통의 과제로서 검토한 최초의 세계적인 모임으로 그후 각국과 국제기구의 환경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스톡홀름 회의의 성과에 따른 것으로서 '72년말에는 UN총회에서 「UN환경계획(UNEP)」이 설립된 것 외에도, '73년 3월에는 「멸종 위험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취급에 관한 조약(위싱톤조약)」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國際海事기관이 중심이 되어 '72년 11월에는 「폐기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방지에 관한 조약」이, '73년 11월에는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 국제조약(MARPOL조약)」, '78년에는 同조약의 議政書가 채택되었다.

(2) 商業捕鯨의 전면금지 결정

일본의 상업포경은 '88년 3월말에 정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UN인간환경회의의 상업포경 금지 권고에 따른 것으로, 국제포경위원회(IWC)가 과학 小委의 권고도 없이 '82년에 상업포경 전면금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일본은 IWC 과학소위의 권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표결의 힘으로 강행한 同결정은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후 미국에 의한 제재 발동의 회피를 둘러싼 장시간의 회의끝에 '85년 4월 美·日 포경취소 결정에 따라 이의를 철회하게 되었다. IWC에서는 50년대부터 고래의 남획을 문제시하는 의견이 제기되었었으며, UN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된 '72년 6월에 런던에서 개최된 IWC 과학소위는 UN인간환경회의가 채택한 상업포경 전면금지 권고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은 미국 등에서 「Safe the whale」 캠페인 등 IWC 외에서의 反포경운동을 한층 가열시킨

결과를 초래하여 그후 IWC가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띠는 동기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Green Peace 등의 환경보호단체나 동물애호단체에 의한 압력이 높아져 '72년에는 海産哺乳動物保護法이, 그후 백우드·맥나존 수정법 등의 포경관계 제재법이 시행되었지만, 미국에서의 고래보호운동은 관계국내법에서도 지지받아 한층 지지층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反포경운동은 '58년 당시에 이미 고래의 인도적 보호가 논의되는 등 동물애호에 강한 관심을 가진 영국이나 그외의 제외국에서의 반포경운동과 부응하여 UN인간환경회의 이후 급속히 진행되어 82년에 IWC가 상업포경의 전면금지를 결정하기에 이르러 정점에 달하였다. 또한 고래 이외의 바다표범, 물개 등의 해산포유동물도 환경보호단체 등에 의한 반포획운동의 대상이 되고, 캐나다의 바다표범 포획에 대해서는 현재 강한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3) 해양 폐기물 문제

해양 생태계의 보전등의 입장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고래 등의 해산포유동물의 포획 자체에 대한 반대운동과는 다르게, 최근들어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한 해양오염과 流失網 등에 의해 해산포유동물이나 어류가 휘말려 소위 고스트 픽싱크가 미국, 캐나다 등의 제외국에서 문제시되고있고, 국제기관등에서도 각종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 海事機關에서는 어망을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지속성을 가지고 오래 동안 바다에 부유하기 때문에 해양생물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을 야기한다.

이러한 지속성 플라스틱 폐기물에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UN식량·농업기구 등의 관계기관의 주의를 환기함과 동시에 산하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의 해양투기금지를 정한 MARPOL 조약의 附屬書 V를 발효시키는 것을 당면 우선 사항으로 하고, 未締約國의 조기 체결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UN 식량농업기



관은 유실망이나 폐기망, 통상의 어업활동에 의한 해산포유동물의 혼획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적 수준도 있지만, 발틱해의 해양 환경보전에 관한 헬싱키조약, 선박 및 항공기에서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오슬로조약, 陸上起源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파리조약등의 체약국간에 있어서도 플라스틱 제품등에 의해 해양오염이나 해산포유동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4) 미국의 동정

미국 200해리 수역내의 어업에 대해서는 해산포유동물보호법에 따라 해산포유동물의 混獲허가서의 취득을 요구하고 있으며, 근년에 들어서서 미국정부는 프리버로브島系의 물개를 同法에 규정된 절멸의 위험에 있는 해산포유동물로 지정하기 위한 수속을 개시하였다. 또한, 일부의 미국의원은 작년 유실망어업은 다수의 해산포유동물, 海鳥, 非어획 대상어를 혼획하는 外, 유실망등에 의한 해양오염이나 고스트 픽 싱크등 많은 문제를 가진 魚法이므로 유실망어업에 의한 문제를 조사 평가할 목적으로 한 결정을 미국의 연안에서 유실망어업을 행하고 있는 나라의 정부와 1년이내에 체결하는 것, 1년이내 체결한 동정부에 대해서는 미국의 연안에서 근업을 인정하는 것, 아누산열도 연안 60마일을 海鳥보호수역으로 하는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실망어업규제법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3.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에 따른 일본의 노력

상술한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은 넓게, 국제적으로 그 문제점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① 해양폐기물에 의한 해양오염, ② 이것에 의한 해산포유동물이나 해조등의 過남획, ③ 어업에 의한 해산포유동물, 해조, 비어획 대상 어종의 혼획, ④ 상업포경 반대운동등 여러가지 각도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려면 해양생태계의 유지 및 동물애호로 대별된다.

해양폐기물은 어망의 일반 상선이나 해저 개발등의 해상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 그리고 육상에서 기인된 폐기물도 포함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어업뿐 아니라 그외의 분야도 포함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으로서의 해양폐기물에 의한 해양환경으로의 악영향의 방지에 대해서는 종래보다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폐기물등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조약이나 MARPOL조약 등의 관계조약을 체결하고, 국내법령을 정비함과 함께 어업에 대해서도 지속성 폐기물의 재처리 시설이나 海洋上소각처리 시설의 확충, 어망에 대한 마크의 부설등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계몽 TV의 방영, 팜프렛의 배포등에 의한 도덕성의 향상에도 노력해 오고 있다.

한편, 어업에 의한 해산포유동물이나 해조의 혼획은, 유실망등의 어업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곤란한 문제이고, 어업관리의 일환으로서 처리되는 문제이지만 일본으로서의 조업구역의 제한, 漁具의 개량, 해산포유동물의 혼합상황의 파악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

4. 결 언

금후 국제적으로는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이 강화되고 있고, 이면에서 원양어업이 새로운 대응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의 유실망어업규제안은 그 일례이고, 이것이 성립하게 되면, 일본의 북양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해양환경이나 해양생태계의 보호 및 보전의 요청은 그 자체를 진실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이지만, 문제는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른 이익과의 조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 문제의 해결에는 각국이 노력해서 과학적 지식을 축적하고, 이것에 따른 합리적인 해결을 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동시에 해양환경이나 해양생태계의 보호나 보전의 요청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원양어업 발전의 길을 생각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사료된다. \*

# 환경관계 告示 · 公告

◎ 배출부과금 관련 '87 가격변동지수 결정고시

1. 결정이유

개정된 환경보전법 시행령('87.6.4)에 따르면 전년도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환경청장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에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를 곱하여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87 가격변동지수를 결정고시하게 되었음.

2. 관련근거 : 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17 조의 10 제 1 항

3. 내 용

가. 배출부과금 산정지수 인상하지 아니함.

○ '87 가격변동지수 :  $\frac{100}{100} = 1.0$

○ '88 부과금 산정지수 :  $2.0736 \times 1.0 = 2.0736$

나. 인상하지 아니한 이유

- (1) 배출부과금 대폭강화('87년도 6월 법·시행령 개정시)
  - 부과기간 확대 (기산일을 오염물질 채취일로 소급적용)
  - 무허가 배출시설 부과대상에 포함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인상
  - 위반회수별 수과계수 신설
- (2) '87년도 평균 도매물가 상승율이 0.1%로 낮음
- (3) 기업의 경제적 부담완화

◎ 서울환경지청공고제 20 호

독극물업소행정처분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한 독극물 업소중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한 업소를 이에 공고합니다.

1988년 1월 5일

서울환경지청장

독극물업소 행정처분 내역

종 별	등록번호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행 정 처 분
제조업	제 25 호	건설실업(주)	김광균	인천시북구가정동 산 101	영업등록취소
"	제 41 호	명진성업(주)	김진석	인천시북구가좌동 480-13	"
"	제 8 호	대경화학공업(주)	배완주	서울시도봉구방학동 80-3	영업정지 3월 (87.12.31 ~ 88.3.29)
"	제 86 호	리파약품공업사	김홍열	경기도부천시삼정동 216-13	"
"	제 93 호	태흥화학상사	이경연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동 8가 58	"
"	제 94 호	용일상사	김영운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동 7가 94-335	"

◎ 환경청고시제 87-41 호

오염물질추정대행자의 지정등에 관한업무

처리규정

환경청고시 제 86-6 호 (86.4.7) 오염물질추

정대행자의 지정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88년 1월 6일

환 경 청 장

※ 내용 : 생략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자로 지정을 받은자의 측정대행구역은 이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된 측정대행구역안에서 측정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때에는 1988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측정대행구역을 적용한다.
3. 이 규정 시행시 이미 측정대행자로 지정받은 춘천에 소재한 신우건설(주)는 원주환경지청 관할지역에 둔다.

◎ 환경청고시제 87-42 호

수역별 환경기준적용등급설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 6 조(환경기준의 설정

◎ 경상남도고시제 272 호

도시계획법 제 12조제 1항,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지적 승인된 양산 도시계획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시설(산업폐기물 처리)결정 내용을 같은법 제 12조제 4항, 동시행령 제

1. 양산도시계획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시설(산업폐기물처리) 및 지적승인조서  
쓰레기및오물처리장(산업폐기물처리시설)결정및지적승인조서

1. 결정(면적)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신 설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산업폐기물처리 시설)	양산군 양산읍 산막리 외 2필지	370번지 2,252

2. 편입면적조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양산군양산읍산막리	370	답	2,884	1,974	부산시진구초읍동 180-20	이득업
"	377-1	묘지	10,605	250	부산시진구당감동 177-1	서규석
"	536	구거	4,661	28	국(농수산부)	
계	3필		18,150	2,252		

\*

항목 등) 별표 5 환경기준 3. 수질, 가. 하천 및 호소에 적용하는 “수역별 환경기준적용등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내용 : 생략

1988년 1월 6일

환 경 청 장

◎ 환경청고시제 87-38 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오수정화시설 설치 제외지역을 고시한다.

1987년 12월 26일

환 경 청 장

※ 내용 : 생략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고시의 폐지) 이 고시는 시행과 동시에 환경청고시 제 84-7 호, 제 85-11 호, 제 85-12 호, 제 86-1 호, 제 86-2 호는 이를 폐지한다.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결정 및 지적 승인 도서사본을 양산군청과 관할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87년 12월 29일

경상남도지사